

창원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나53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효정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2.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가단10907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91,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2, 3행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로 바꾼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4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에 관한 공사비용 부담금을 산정하면, 원고는 이를 2018. 10. 1.까지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공사비 부담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14. 이 사건 공공지장물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에 기한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 할 수 없다.

한편, 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각 계약 담당자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무렵에 ‘의의가 있으면 추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라/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해석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이 계약 체결의 의사 없이, 즉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공사비 부담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별도의 무효, 취소 원인을 내세워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개별 협약을 통해 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공공지장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된 이유 및 당시 공사 진행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 부담을 요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

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정, 판사 서경원, 판사 진민희